

2016년 8월 활동보조인 간담회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 시 | 2016년 8월 1일(월) 10시 / 14시 / 18시 |
| 장 소 | 부모회 403호 교육실 |

1.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원리원칙 업무

- **실시간 결제** 준수 : 근무 **시작시간**과 **종료시간** 준수.
- **이용자와 같이 있을 때에만** 근로로 인정됨.
- **동 시간대에 2인 이상** 돌봄 불가(본인의 자녀와 이용자를 동시 돌봄 포함).
- **근무 중(결제 진행중) 지원인력의 개인업무 불가**(은행, 병원 포함).
- 입원 : **이용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30일까지** 활동보조 지원 가능.
- **낮병동 입원** : 낮병동 증명 서류를 구비해 놓거나 추후 요청시 제출.
- **바우처 미생성시 근무 불가**(바우처 생성일부터 근로 가능).
- **출입국 날 결제 지양** : 해외 출입국 날짜에 근로가 있을 시, **출입국 시간을 증명할 자료**를 이용자(또는 지원인력)이 **제출**해야 함.
- 이용자의 수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.
- **활동 중 위급상황 발생시 119 연락 후, 보호자 가정과 사무실에 연락.**

2. 전자바우처 **클린센터** 안내(사업에 대한 **부당행위 신고센터**)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 상단 ‘클린센터’

전화번호 : 02-6360-6799

근무 중 문의사항이 생길 시, <부모회 사무실> 또는 <**사회서비스 콜 센터 : 1566-0133**>

로 문의하세요. (단말기 결제시 오류코드 확인, 클린센터 신고 등)

3. 일정표 & 제공 기록지

급여발송 전날까지, 미비된 일정표 · 제공기록지를 제출해주세요.

미제출시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(시추가 제공기록지는 2일 이내).

4. 제공인력 한 분당 **최대 근로시간(결제가능 시간)은 170시간 미만**

* 2014년 8월 이후로 누차 공지했던 내용이지만, **“2개 기관 이상 근무여도 최대 208시간 이상을 하지 못 한다.”** 라고 합니다.

5. 이용자 중심으로 담당자를 나눔(전화 및 상담할 때엔 담당자를 찾아주세요.).

- 동탄 2지구, 남서부권 : 정광권 대리
- 동탄 1지구 : 김은희 대리
- 병점지역 : 이삼현 주임
- 시외지역 : 강미애 사회복지사

6. 사무실 상담시간 변경 안내

원활한 활동보조 운영을 위해 **상담 및 전화업무**를 09:00~17:00까지 **진행**하게 되었습니다. 17:00이후로는 연계 또는 외근업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니, 업무에 참고바랍니다

7. 2016년 건강검진 안내

2015년 건강검진 받으셨으나, 결과서 제출 안하신 분들은 제출 바랍니다.

2016년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특히 암 검진, 구강 검진 대상자분들은 꼭! 모두 다 받아서 결과를 제출해주세요.

8. 화성시 추가지원사업 내용 변경 안내

- 국비, 도비 추가급여 대상자인 경우 전 신청 후 시추가지원 신청

☆국비, 도비 추가급여 미신청 시 시자체 지원 불가

- 시추가는 22시~06시 이용 불가합니다.

(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21:59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.)

- **심야시간(22시~06시)** 이용은 <1인 독거(추가지원의 종류)>만 가능합니다.

(1인독거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심야시간을 이용하고자 하시면, **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**가 필요합니다.)

-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공기관, 보조인 **지도점검** : 합동 1회, 자체 2회(상·하반기)

- **추가변경사항(6월부터 적용)**

*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, **실제 거주**해야 함.

* 서비스 제공범위는 **화성시 관내로 제한**(관외는 학교, 직장, 병원이용 등의 필요시간만 인정 : **해당 증명 서류 제출**).

- **추가안내사항(7월)**

* 활동보조와 목욕서비스 중복 결제 불가능

9 전자바우처 결제 종료 안내

전담직원들이 출근해서 전자바우처를 확인해보면, **바우처를 시작하시고, 종료를 하지 않으신**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. **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은 실시간 결제**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소급결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
10. 2016년 07월부터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도가 도입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의 **특별한 사유**에 해당되는 청구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급하게 됩니다.(해당건에 대하여 급여가 바로 나가지 않게됩니다.)

<**특별한 사유**는 복지부가 정한 부정이 의심되는 **이상결제 유형**을 말함>

(이상결제 : 소급결제, 심야결제, 연속결제 등, 정상 실시간 결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.)

11. **제공인력 및 대상자 정보변경이 있거나, 계약 관련되어 입·퇴사 변동이 생길 경우,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꼭 연락주세요.**